

#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18호, **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(수입) '25년 결산 결과 예치금회수 248억원 및 펀드 회수 예상액 70억원 증액

나. (지출) 수입증가에 따른 신규 및 기초성 펀드 출자금 231억원 증액과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87억원 예치금 편성

[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·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액(B-A)	증감률(B/A)
합 계	67,516	99,266	31,750	47.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53,003	77,742	24,739	46.7%
예치금회수	11,453	36,192	24,739	216.0%
기타회계전입금	41,550	41,550	0	-
세외수입	14,513	21,524	7,011	48.3%
기타사업수입	13,000	20,000	7,000	53.8%
공공예금이자수입	1,500	1,500	0	-
기타이자수입	3	1	△2	△76.2%
위탁비반환수입	10	23	13	128.1%

[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·단위·세부사업	당초(A)	변경(B)	증감액(B-A)	증감률(B/A)
합 계	67,516	99,266	31,750	47.0%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	40,326	63,382	23,056	57.2%
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출자금	32,088	55,144	23,056	71.9%
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 조성 출자금	6,542	6,542	0	-
서울 벤처펀드 (미래혁신, Vision 2030) 운영	296	296	0	-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출자금	700	700	0	-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출자금	700	700	0	-
재무활동	27,180	35,874	8,694	32.0%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	25,220	25,220	0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	1,420	1,420	0	-
예치금	540	9,234	8,694	1,610.2%
행정운영경비	10	10	0	-
기본경비	10	10	0	-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의견<sup>1)</sup>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 회수**가 247억 3,900만원 증가하고, **사업수입**중 미래혁신성장 펀드 회수 예상액이 증가(70억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
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① **예치금**을 86억 9,400만원 증액하고, ②다른 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(출자금)은 230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2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1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±0.1% 범위내) 차이 있음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**은 당초 지출계획(271억 8,000만원)보다 32.0%, 86억 9,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,
  - ②다른 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도 당초 지출계획(403억 2,600만원)보다 57.2%, 230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일부 금액을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의 펀드 조성 출자금으로 증액 조정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3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예치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에 230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**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출자금**<sup>4)</sup>에 지출계획하는 것인 바,

3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용도)

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4) 서울 Vision2030 펀드 조성 출자금을 당초 320억 8,800만원에서 551억 4,400만원으로 230억 5,600만원 증액함
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하려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5)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, 지난 '25년 8월, '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」 6)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동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됨7)
- 기금운용부서로서는 지난 '19년 4월, 행정안전부가 '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·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'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어8)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증액하여 운용하려는 출자금은 별도의 출자 동의안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
-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'15년도에 「지방재정법」 중 출자·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'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취지로서 매년 출자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'는 내용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로 통보한 바 있어9) 기금운용부서가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해석('19년 4월)과 당초 법 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
5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6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」

① 의안번호 : 3055, ② 제안(시장) : '25. 8.11, ③ 의결 : '25. 9.12(원안가결)

7) 서울특별시의회, 의사과-3047 ('26. 5.27), “시장 및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”

8) 행정안전부, 재정정책과-2082 ('19. 4.29), “출연관련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”

9) 행정자치부, 재정정책과-5653 ('15.10.19)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출자·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”

-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'25년도부터 '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<sup>10)</sup>
  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나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'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출자 동의를 시의회로부터 얻었다하여도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재원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지출계획하려는 미래의 사안까지 약 9개월전 미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'2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만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사 및 의결권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사례일 수 있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절차인 관련 「출자 동의안」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관련 「출자 동의안」을 제출한 바 없어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(출자금)**에 230억 5,6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은 불가한 사안으로 관련 절차가 이행된 이후 「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이 제출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

10) 행정안전부, 「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4. 7), p.124